|  |  |  |
| --- | --- | --- |
| **인증기구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41호  《인증기구 관리방법》이 2011년 1월 13일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11년 7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증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인증활동을 규율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이하 인증인가조례라 함)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인증기구라 함은 법적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독자적으로 제품, 서비스 및 관리체계가 표준, 관련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는 적격 평가활동에 종사하는 한편 법인자격을 구비하는 증명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인증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통일적으로 인증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인증기구의 설립 및 관련 인허가, 그 업무종사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지갈시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부서(이하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라 함)와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직속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관할구역 내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인증기구가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정 공개, 객관독립,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의 신용체계를 수호해야 한다.  **제6조** 인증기구 및 그 업무직원은 그가 업무에 종사할 때 알게 된 국기기밀, 상업비밀 또는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설립과 심사허가**  **제7조** 인증기구를 설립하려면 국가인감위의 심사허가를 득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한 후에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심사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인증기구의 설립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적인 사무장소와 필수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인증인가 요구에 부합되는 정관과 관리제도가 구비되고, 인증 신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인민폐 300만 위안을 필요로 하며, 출자인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고 필요한 신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응하는 분야의 직업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증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인증기구 동사장, 총경리(주임) 및 관리자 대표(이하 고급 관리인원)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기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요건.  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는 이 밖에 그가 종사하는 관련제품 인증활동에 필요한 검측, 검사 등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설립하는 인증기구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 밖에 아래의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는 중국 경외에서 3년 이상의 상응하는 분야의 인증경력을 구비한 기구여야 하며,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 당국에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외국투자자는 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인가기구로부터 상응하는 분야의 인가 또는 유관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중외합자, 합작경영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중국 합자, 합작파트너는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얻은, 3년 이상 인증업무 종사경력을 구비한 인증기구여야 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취득한 검사기구, 실험실로서 불량 종업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이 조 제(1), (2)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밖에 외국인투자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정책 등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심사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증기구 설립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국가인감위에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이 방법 제8조, 제9조 규정 요구에 부합되는 유효 증명문건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인감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1차 심사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3)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 설립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기구 설립통지서를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국가인감위는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여 신청인의 인증, 검측 등 기술능력에 대한 평의를 실시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가평의 시간은 30일로 하며, 국가인감위의 허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국가인감위에서 제시한 인증기구 설립통지서를 지참하고 법에 따라 관련 등기수속을 밟으며, 법에 따라 밟은 등기수속에 의거하여 《인증기구 허가서》를 수령한다.  (6) 국가인감위는 사회에 이를 공시하고 동시에 그 웹사이트에 법에 따라 설립한 인증기구 명단을 공포한다.  국가인감위가 실시하는 인증기구 심사허가 업무는 자원의 합리적 배치, 편의와 효율성, 공개 투명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기구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인증기구가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90일 전에 국가인감위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연장 신청을 제출한 인증기구에 대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설립요건과 심사허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기구가 자회사, 분공사를 설립 시에는 인증기구 심사허가절차에 따라 국가인감위의 허가를 득하고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후에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기구가 자회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인증기구가 업무에 종사한 지 2년 이상이고 동시에 2년 내에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2) 자회사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설립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3) 자회사는 인증기구가 100% 자본 출자를 하거나 지분을 지배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기구가 분공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인증기구가 업무에 종사한 지 2년 이상이고 동시에 2년 내에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2) 분공사는 고정적인 사무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분공사는 상응하는 분야의 직업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전문 인증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분공사 소재지에 본 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5) 분공사에 인증인가에 부합되는 필요한 관리제도가 갖추어 져야 한다.  (6) 기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요건.  **제15조** 인증기구는 허가범위 내의 업무선전과 활동추진에 종사하는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국자본 인증기구는 사무기구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 인증기구는 사무기구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내용에는 명칭, 주소, 책임자, 업무범위, 예속 인증기구 등이 포함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등록한 사무기구 명단을 공개하고 아울러 국가인감위에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인증기구의 사무기구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외 인증기구는 중국 경내에 그 업무범위 내에서 선전, 홍보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인감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내용에는 명칭, 주소, 책임자, 등기증명문건, 국외 인가기구 증명문건, 예속 인증기구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등록한 대표기구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기구가 계약형식으로 경외 인증기구의 인증업무를 수주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시에 수주로 인해 초래되는 인증리스크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수주업무를 신청하는 인증기구는 먼저 상응하는 인증분야의 종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관련 변경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기구가 허가된 업무범위를 줄이는 경우  (2) 인증기구가 법인 성격, 주주, 등록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  (3) 인증기구가 합병 또는 분립하는 경우  (4) 인증기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고급 관리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5) 인증기구에 기타 중대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구가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구는 1년 이상 인증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1년 내에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업무범위 확대 신청은 국가인감위에서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장 행위규범**  **제19조** 인증기구는 공정, 독립 및 객관적으로 인증활동을 전개하고 리스크 방범기제를 구축하고 그 인증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와 책임에 대해 합리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기구 및 그 자회사, 분공사, 사무기구는 인증자문기구와 인증의뢰인의 자산, 관리 또는 인원과 이익관계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인증기구는 인증활동의 규범, 유효를 보장할 수 있는 품질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의 기본규범과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에서 인증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구는 스스로 인증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에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증기구는 웹사이트나 기타 형식을 통해 그 인증범위, 인증규칙, 요금기준, 그리고 그가 설립한 자회사, 분공사 또는 사무기구의 명칭, 업무범위, 주소 등 정보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보내용의 진실, 유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증기구 및 그 분공사, 자회사가 동시에 활동을 전개 시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 이외에 아래의 요구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구가 공상부서에 등록 등기한 주소는 주요 사무장소여야 하며, 인증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 송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구가 1개 이상 사무장소에서 인증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무장소에서 동일한 관리체계와 절차를 적용하여 모든 인원과 인증과정을 컨트롤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기구는 인증요원 관리 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정기적으로 인증요원에 대한 능력 양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요원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며 아울러 인증 심사과정 중에서 합리적인 수량의 전문 인증요원과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국가 법률, 법규가 인증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금지한 인원을 임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인증기구는 인증의뢰인이 의뢰한 인증분야, 제품, 내용의 관련 법률, 법규와 그 법인자격 등 자격상황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인증의뢰인의 규모, 성격 및 조직과 제품의 복잡 정도에 근거하여 인증 전반과정을 기획하여 구체적 시행, 검측, 검사 및 감독 등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응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인증요원과 기술전문가에 위촉하여 인증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증기구는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 전반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컨트롤을 실시하여 인증과 제품의 테스트 과정의 완비, 객관,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소급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인증절차와 활동을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상응하는 능력과 전공을 구비하는 인증요원을 배치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상응하는 절차를 제정하여 인증결과에 대한 평가와 유효한 컨트롤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인증증서 발급, 임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평가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26조** 인증기구는 인증 전반과정에 대해 완벽한 기록을 남기고 상응하는 인증자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기록은 진실, 정확하고 인증활동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기록, 자료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인증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인증기구 및 그 인증요원은 지체 없이 인증결론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인증결론의 객관,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결론은 인증요원이 서명하고 인증기구에서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구 및 그 인증요원은 인증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인증기구는 인증결론이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의뢰인에게 인증증서를 제시하고 인증증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인증증서는 인증기구의 위임을 받은 인원이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증서에는 인증증서 취득조직의 명칭, 주소, 적용범위 또는 제품, 인증이 의거한 표준 또는 관련 기술규범, 유효기간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인증증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인증을 실시한 실제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증기구의 인증증서 양식은 확정된 후 30일 내에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공중에게 인증증서의 유효성을 조회하는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합병 또는 분립된 인증기구는 그 변경 전에 제시한 인증증서를 폐기 처분하고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인증증서를 교체하여야 한다.  인증기구의 허가가격이 말소, 취소된 후 당해 기구의 유효 인증증서를 소지한 증서 취득조직은 국가인감위에서 허가한 인증기구에서 인증증서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인증증서 교체를 처리하는 인증기구는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교체수속을 처리하고 교체결과를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인증기구는 증서 취득조직이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잘 못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증기구는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요구에 따라 그 인증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추적 감독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감독검사 주기를 확정함으로써 인증에 통과된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인증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인증기구는 그 인증증서를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 지체 없이 사회에 공포하여야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효 인증증서와 인증마크가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자회사, 분공사는 인증기구의 명의로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 방법의 규정과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인증기구 자회사, 분공사는 기타 형식으로 인증활동과 관련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그가 종사하는 인증활동을 의뢰할 수 없다.  **제33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사무기구와 경외 인증기구가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및 인원은 인증계약의 체결, 현장 심사(검사), 심사(검사) 보고 제시, 인증 실시결정, 인증비용 수취 등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나 변상적으로 인증교육과 인증자문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검사**  **제34조**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의 인증인가조례 및 이 방법 준수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의 운행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인증결과와 인증활동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표본검사 결과와 관련 인증기구 및 증서취득 조직의 명단을 공포한다.  **제35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에 대한 인증업무 실시정보 송부와 연도 업무보고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인증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인증업무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는 증서취득 조직의 상세한 정황, 인증증서 임시 정지 또는 취소 상황, 그리고 인증결과와 관련되는 업무정보 상황이 포함된다.  국가인감위는 지체 없이 인증기구에서 송부한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일괄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매년 2월말 전에 직전 연도의 업무보고를 국가인감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는 업무종사 기본상황, 인원, 업무상황, 질 분석, 그리고 국가의 자격요구에 부합되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제시한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제36조**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라 함)는 각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할구역 인증활동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인증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감독 조율업무 기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서 실시한 인증기구 사무기구의 등록비치 및 인증 법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소속 시, 현 질량기술감독부서에서 실시한 인증 법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그 소속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실시한 인증 법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매년 3월말 전에 직전 연도의 관할구역 인증감독관리 업무상황을 국가인감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행정관리 중에서 아래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 후 인증기구를 경고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설립한 사무기구를 소재지 성급 인증감독부서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경외 인증기구가 중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후 국가인감위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스스로 제정한 인증규칙을 국가인감위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기구의 고급 관리인원이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5) 인증증서, 인증마크를 등록 비치하지 않았거나 증서취득 조직, 제품에 제시한 증서, 마크가 등록 비치한 증서, 마크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국가는 인증기구에서 인가기구의 인가를 취득하는 것을 통해 그 인증능력이 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것을 장려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증기구는 법정 요구에 따라 인가에 통과되어야 한다.  인가기구는 인가를 취득한 인증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추적 감독을 실시하고 인증결과의 부합성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가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하는 인증기구에 대해서는 인가자격을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인가 감독 중에서 발견한 불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인증인가협회는 인증기구의 업계자율 관리업무를 보강하여 인증기구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업계 자율규범 이행 상황을 평의하여야 하며, 인증기구의 불법, 규정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인증기구와 증서취득 조직은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감독 검사업무에 협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와 조사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증서취득 조직에 제품품질 안전사고, 환경오염 또는 직업건강 안전사고가 존재하거나 행정기관의 감독 표본검사에서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 인증기구는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인증증서를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 지체 없이 국가인감위,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유관 행정기관을 협조하여 증서취득 조직에 대한 추적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인증기구 허가서》 말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심사를 거쳐 허가서를 연장하는데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기구가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마땅히 말소시켜야 하는 기타 상황.  **제4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그 직권에 의거하여 인증기구에 대한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인감위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정 직권범위를 벗어나서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정절차를 어기고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4) 신청자격이 구비되지 않거나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5) 인증기구가 법정요건과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정요건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6) 법에 따라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제46조** 누구든지 인증활동 중의 불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으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보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46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기만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인증기구 설립 등 허가사항을 신청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주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인증기구 설립 등 허가사항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7조** 신청인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인증기구 설립 등 허가사항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며, 신청인은 3년 내에 인증기구 설립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인증기구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회사 또는 분공사를 설립하여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 자회사 또는 분공사에 인증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에 6개월간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가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 허가증을 취소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 그 직업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이를 공포한다.  **제49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사무기구가 인증계약 체결, 현장심사(검사) 실시, 심사(검사)보고 제시, 인증결정 실시, 인증비용 수취 등의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부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에 6개월간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며,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는 1년간 직업정지 처분을 가한다.  **제50조** 경외 인증기구가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가 인증계약 체결, 현장심사(검사), 심사(검사)보고 제시, 인증결정 실시, 인증비용 수취 등의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 불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51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자회사, 분공사가 기타 형식으로 기구를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인증활동에 종사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국가인감위는 자회사, 분공사의 허가자격을 취소하고 그 인증기구에 6개월간 조업 정지정돈을 명령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 1년간 직업자격 정지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허가증을 취소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는 그 직업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이를 공포한다.  **제52조** 인증기구가 국가인감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외 인증기구의 인증업무를 수주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6개월간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이를 공포하며,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 대해서는 1년간 직업정지 처분을 주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3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이를 공포한다.  (1) 전문 인증요원이 변경되어 그 수량과 직업자격이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증기구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한 기한 내에 연도 심사보고서, 증서취득 조직 등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부실한 경우  (4) 기타의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4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1) 인증증서를 임시 정지시키거나 취소한 후 사회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증 의뢰인에게 인증 심사문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시간이 엄중하게 부족하여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규정에 미달한 경우  (4) 인증 자문활동에 종사한 경우  (5) 증서취득 조직의 제품이 관련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제품생산표준을 법정 요구에 따라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데 대해 인증기구가 규정에 따라 그 인증증서를 잠시 정지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행정기관의 감독검사 중에서 그 종업활동을 반영하는 상황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7) 기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제55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에게 6개월간의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등록(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인원 또는 인증요구와 능력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원을 임용하여 인증 심사, 검사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2)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를 증가, 감소, 누락하여 인증요원이 심사현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인증의뢰인의 시정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인증증서를 제시한 경우  (3) 내부관리가 혼란하고 1개 이상의 사무장소에서 인증결정을 내려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절차와 요구에 따라 그가 인증하는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인증이나 추적 감독을 실시하지 못한 결과를 빚어내어 사회에 불량영향을 초래한 경우  (4) 인증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구가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를 임시 정지시키거나 취소하지 않고 대외에 공포하지도 아니한 경우  (5) 기타의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제56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인증활동을 전개한 경우  (2) 《인증기구 허가서》를 개찬, 위조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허가자격을 불법 양도한 경우  (3) 조업정지 정돈 기간에도 계속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4) 조업정지 정돈 기간이 만료된 후 인증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7조** 인증기구가 허위 인증결론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결론이 엄중하게 부실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에게 경고를 주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 대해서는 그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8조** 인증기구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60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인증기구가 대륙에 인증기구 또는 대표기구를 설립 시에는 이 방법 제2장의 경외 인증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해석한다.  **제62조** 이 방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认证机构管理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41号  《认证机构管理办法》已经2011年1月13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9月1日起施行。  局 长  二〇一一年七月二十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对认证机构的监督管理，规范认证活动，提高认证有效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以下简称认证认可条例）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认证机构是指依法经批准设立，独立从事产品、服务和管理体系符合标准、相关技术规范要求的合格评定活动，并具有法人资格的证明机构。  **第三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认证活动，以及对认证机构的监督管理，适用本办法。  **第四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统一负责认证机构的监督管理工作。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国家认监委）负责认证机构的设立和相关审批及其从业活动的监督管理工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质量技术监督部门（以下简称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和直属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直属检验检疫机构）依照本办法的规定，按照职责分工负责所辖区域内认证活动的监督管理工作。  **第五条** 认证机构从事认证活动应当遵循公正公开、客观独立、诚实信用的原则，维护社会信用体系。  **第六条** 认证机构及其人员对其从业活动中所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技术秘密负有保密义务。  **第二章 设立与审批**  **第七条** 设立认证机构，应当经国家认监委批准，并依法取得法人资格后，方可从事批准范围内的认证活动。  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认证活动。  **第八条** 设立认证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固定的办公场所和必备设施；  （二）具有符合认证认可要求的章程和管理制度；属于认证新领域的，还应当具有可行性研究报告；  （三）注册资本不得少于人民币300万元；出资人符合国家有关法律法规以及相关规定要求，并提供相关资信证明；  （四）具有10名以上相应领域执业资格和能力的专职认证人员；  （五）认证机构董事长、总经理（主任）和管理者代表（以下统称高级管理人员）应当符合国家有关法律、法规以及国家质检总局、国家认监委相关规定要求，具备履行职务所必需的管理能力；  （六）其他法律法规规定的条件。  从事产品认证活动的认证机构，还应当具备与从事相关产品认证活动相适应的检测、检查等技术能力。  **第九条** 外方投资者在中国境内设立认证机构除应当具备本办法第八条规定的条件外，还应当符合下列要求：  （一）外方投资者为在中国境外具有3年以上相应领域认证从业经历的机构，具有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当局的合法登记，无不良记录；  （二）外方投资者取得其所在国家或者地区认可机构相应领域的认可或者有关当局的承认；  （三）设立中外合资、合作经营认证机构的中国合营、合作者应当为经国家认监委批准的具有3年以上认证从业经历的认证机构或者依法取得资质认定的检查机构、实验室，并无不良从业记录；外方投资者应当符合本条第一、二项；  外方投资者在中国境内设立认证机构还应当符合有关外商投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外商投资产业指导政策等规定。  **第十条** 设立认证机构的审批程序：  （一）设立认证机构的申请人（以下简称申请人），应当向国家认监委提出申请，并提交符合本办法第八条、第九条规定条件的有效证明文件和材料；  （二）国家认监委应当对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进行初步审查，并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5日内作出受理或者不予受理申请的书面决定，对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  （三）国家认监委应当自受理认证机构设立申请之日起90日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向申请人出具认证机构设立通知书，决定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四）国家认监委应当根据需要组织有关专家对申请人的认证、检测等技术能力进行评审，并书面告知申请人。专家评审的时间为30日，不计算在国家认监委作出批准的期限内；  （五）申请人凭国家认监委出具的认证机构设立通知书，依法办理有关登记手续，凭依法办理的登记手续领取《认证机构批准书》；  （六）国家认监委应当向社会公告，并在其网站上公布依法设立的认证机构名录。  国家认监委实施认证机构审批工作中应当遵循资源合理配置、便利高效、公开透明的原则。  **第十一条** 《认证机构批准书》有效期为4年。  认证机构需要延续《认证机构批准书》有效期的，应当在《认证机构批准书》有效期届满前90日向国家认监委提出申请。  国家认监委应当对提出延续申请的认证机构按照本办法规定的设立条件和审批程序进行复查，并在《认证机构批准书》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  **第十二条** 认证机构设立子公司、分公司应当依照认证机构审批程序进行，经国家认监委批准，并依法取得公司登记机关登记后，方可从事批准范围内的认证活动。  **第十三条** 认证机构设立子公司应当符合下列条件：  （一）认证机构从业2年以上，并且2年内无违法违规行为；  （二）子公司符合本办法第八条规定的设立条件，同时符合其他法律、行政法规的规定；  （三）子公司由认证机构全资或者控股。  **第十四条** 认证机构设立分公司应当符合下列条件：  （一）认证机构从业2年以上，并且2年内无违法违规行为；  （二）分公司具有固定的办公场所和必备设施；  （三）分公司具有5名以上相应领域执业资格和能力的专职认证人员；  （四）分公司所在地具有获得本机构认证的组织；  （五）分公司具有符合认证认可的相关管理制度；  （六）其他法律法规规定的条件。  **第十五条** 认证机构可以设立从事批准范围内的业务宣传和推广活动的办事机构，并自设立之日起30日内，中资认证机构向办事机构所在地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备案；外商投资认证机构向办事机构所在地直属检验检疫机构备案。备案内容包括：名称、地址、负责人、业务范围、隶属认证机构等。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和直属检验检疫机构应当公布依法备案的办事机构名录，并向国家认监委报送所辖区域内备案的认证机构所属办事机构的名录。  **第十六条** 境外认证机构可以在中国境内设立从事其业务范围内的宣传和推广活动的代表机构，并自设立之日起30日内向国家认监委备案。备案内容包括：名称、地址、负责人、登记证明文件、国外认可机构证明文件、隶属认证机构等。  国家认监委应当公布依法备案的代表机构名录。  **第十七条** 认证机构通过合约方式分包境外认证机构的认证业务，应当经国家认监委批准，并承担因分包而造成的认证风险和相关责任。  申请从事分包业务的认证机构应当首先取得相应认证领域的从业批准。  **第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认证机构应当依法向国家认监委申请办理相关变更手续：  （一）认证机构缩小批准业务范围的；  （二）认证机构变更法人性质、股东、注册资本的；  （三）认证机构合并或者分立的；  （四）认证机构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高级管理人员的；  （五）认证机构发生其他重大事项变更的。  认证机构申请扩大业务范围的，认证机构应当从业1年以上，并且1年内无违法违规行为。  扩大业务范围的申请由国家认监委参照本办法第十条的规定予以办理。  **第三章 行为规范**  **第十九条** 认证机构应当公正、独立和客观开展认证活动，建立风险防范机制，对其认证活动可能引发的风险和责任，采取合理、有效措施，并承担相应的社会责任。  认证机构及其子公司、分公司、办事机构不得与认证咨询机构和认证委托人在资产、管理或者人员上存在利益关系。  **第二十条** 认证机构应当建立保证认证活动规范有效的质量体系，按照认证基本规范和认证规则规定的程序实施认证，并作出认证结论。  国家认监委尚未制定认证规则的，认证机构可以自行制定认证规则，并报国家认监委备案。  **第二十一条** 认证机构应当通过网站或者以其他形式公布其认证范围、认证规则、收费标准以及其设立的子公司、分公司和办事机构的名称、业务范围、地址等信息内容，并保证信息内容真实、有效。  **第二十二条** 认证机构及其分公司、子公司同时开展活动时，除应当遵守法律法规规定的责任义务外，还应当遵守以下要求：  （一）认证机构在工商注册登记的地址，为核心办公场所，统一发布和报送认证信息。  （二）认证机构有多个办公场所开展认证活动时，应当确保所有办公场所采用相同质量管理体系和程序，控制所有人员和认证过程。  **第二十三条** 认证机构应当建立健全认证人员管理制度，定期对认证人员的能力进行培训和评价，保证认证人员的能力持续符合要求，并确保认证审核过程中具备合理数量的专职认证人员和技术专家。  认证机构不得聘任或者使用国家法律法规禁止从事认证活动的人员。  **第二十四条** 认证机构应当对认证委托人委托认证的领域、产品和内容是否符合相关法律法规以及其法人资格等资质情况进行核实，根据认证委托人的规模、性质和组织及产品的复杂程度，对认证全过程进行策划，制定具体实施、检测、检查和监督等方案，并委派具有相应能力的认证人员和技术专家实施认证。  **第二十五条** 认证机构应当按照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规定的程序对认证全过程实施有效控制，确保认证和产品测试过程完整、客观、真实，并具有可追溯性，不得增加、减少或者遗漏认证程序和活动，并配备具有相应能力和专业的认证人员对上述过程进行评价。  认证机构应当制定相应程序对认证结果进行评定和有效控制，并对认证证书发放、暂停或者撤销有明确规定及评价要求。  **第二十六条** 认证机构应当对认证全过程做出完整记录，保留相应认证资料。记录应当真实、准确，以证实认证活动得到有效实施。记录、资料应当使用中文，归档留存时间应当与认证证书有效期一致。  **第二十七条** 认证机构及其认证人员应当及时做出认证结论，并保证认证结论客观、真实。认证结论经认证人员签字，由认证机构提供给认证委托人。认证机构及其认证人员应当对认证结果负责并承担相应法律责任。  **第二十八条** 认证机构对认证结论符合要求的，应当及时向认证委托人出具认证证书、准许使用认证标志，认证证书应当经认证机构授权的人员签发。  认证证书应当载明获证组织的名称、地址、覆盖范围或者产品、认证依据的标准或者相关技术规范、有效期等内容，认证证书所含内容应当符合认证实施的实际情况。  认证机构的认证证书式样应当在确定后30日内报国家认监委备案。  认证机构应当向公众提供查询认证证书有效性的方式。  **第二十九条** 经合并或者分立的认证机构应当对其发生变更之前出具的认证证书作出处理，并按照规定程序转换相关认证证书。  认证机构被注销、撤销批准资格后，持有该机构有效认证证书的获证组织，可以向经国家认监委批准的认证机构转换认证证书；受理证书转换的认证机构应该按照规定程序进行转换，并将转换结果报告国家认监委。  **第三十条** 认证机构应当要求获证组织在认证范围内正确使用认证证书和认证标志，对误用和未按照规定使用认证证书和认证标志的，应当采取有效的纠正措施。  **第三十一条** 认证机构应当按照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的要求对其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实施有效的跟踪监督，确定合理的监督检查频次，以保证通过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持续符合认证要求；对不能持续符合认证要求的，认证机构应当暂停或者撤销其认证证书，及时向社会公布，并采取有效措施避免无效认证证书和认证标志继续使用。  **第三十二条** 认证机构设立的子公司、分公司应当以认证机构的名义从事其批准范围内的认证活动，并依照本办法的规定和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的要求开展工作。  认证机构子公司、分公司不得以其他形式设立与认证活动有关的机构或者委托他人从事认证活动。  **第三十三条** 认证机构设立的办事机构和境外认证机构在中国境内设立的代表机构及人员，不得从事签订认证合同、组织现场审核（检查）、出具审核（检查）报告、实施认证决定、收取认证费用等活动，不得直接或者变相从事认证培训和认证咨询活动。  **第四章 监督检查**  **第三十四条** 国家质检总局、国家认监委对认证机构遵守认证认可条例和本办法的情况进行监督。  国家认监委负责对认证机构的运行情况进行检查，对认证结果和认证活动进行抽查，并公布检查、抽查结果和相关认证机构及获证组织名单。  **第三十五条** 国家认监委对认证机构实行认证业务信息报送和年度工作报告审查制度。  认证机构应当按照相关规定向国家认监委报送认证业务信息，包括：获得认证的组织详细情况、暂停或撤销认证证书情况以及与认证结果相关的业务信息情况。  国家认监委应当及时汇总认证机构报送的相关信息和数据，并予以公布。  认证机构应当于每年2月底之前将上一年度工作报告报送国家认监委，报告内容包括：从业基本情况、人员、业务状况、质量分析以及符合国家资质要求的会计师事务所出具的财务会计审计报告等。  **第三十六条** 各级质量技术监督部门和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统称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定期对所辖区域的认证活动实施监督，查处认证违法行为，并建立相应的监督协调工作机制。  **第三十七条** 国家质检总局、国家认监委应当对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和直属检验检疫机构实施的认证机构办事机构备案以及认证执法工作进行监督和指导。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对所属市、县质量技术监督部门实施的认证执法工作进行监督和指导。直属检验检疫机构应当对其所属分支出入境检验检疫机构实施的认证执法工作进行监督指导。  省级质量技术监督部门和直属检验检疫机构应当于每年3月底之前将上一年度所辖区域认证监督管理工作情况报送国家认监委。  **第三十八条** 国家认监委和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在行政管理中发现下列问题，经调查核实后，应当给予认证机构告诫并责令其改正：  （一）设立的办事机构未向所在地省级认证监管部门备案的；  （二）境外认证机构在中国境内设立的代表机构未向国家认监委备案的；  （三）自行制定的认证规则未向国家认监委备案的；  （四）认证机构的高级管理人员违反本办法有关规定的；  （五）认证证书、认证标志未备案或者向获证组织、产品出具的证书、标志与备案证书、标志不符的。  **第三十九条** 国家鼓励认证机构通过认可机构的认可，以证明其实施认证的能力符合要求；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取得认可的，认证机构应当按照法定要求通过认可。  认可机构应当对取得认可的认证机构进行有效跟踪监督，对认证结果的符合性进行抽查。对不能持续符合认可要求的认证机构，应当作出暂停或者撤销认可资格的处理。对认可监督中发现的违法违规行为，及时报告国家认监委。  **第四十条** 认证认可协会应当加强认证机构的行业自律管理工作，对认证机构遵守法律法规、履行行业自律规范的情况进行评议，发现认证机构的违法违规行为，应当及时向国家认监委报告。  **第四十一条** 认证机构和获证组织应当对国家认监委和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实施的监督检查工作予以配合和协助，对有关事项的询问和调查如实提供相关材料和信息。  **第四十二条** 对于获证组织出现产品质量安全事故、环境污染或者职业健康安全事故以及经行政机关监督抽查中发现不符合法定要求产品的，认证机构应当根据具体情形依法暂停或者撤销认证证书，及时向国家认监委、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以及相关部门通报，并配合有关行政机关对获证组织进行跟踪监督检查。  **第四十三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认监委应当依法办理《认证机构批准书》注销手续：  （一）《认证机构批准书》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的；  （二）《认证机构批准书》有效期届满，经复查不符合延续批准决定的；  （三）认证机构依法终止的；  （四）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的其他情形。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认监委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对认证机构作出的批准决定：  （一）国家认监委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批准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批准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批准决定的；  （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者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准予批准的；  （五）认证机构已经不具备或者不能持续符合法定条件和能力的；  （六）依法可以撤销批准决定的其他情形。  **第四十五条** 任何单位和个人对认证活动中的违法违规行为，有权向国家质检总局、国家认监委或者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投诉或者举报，国家认监委或者地方认证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第五章 法律责任**  **第四十六条** 申请人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认证机构设立等审批事项的，国家认监委不予受理或者不予批准，并给予警告；申请人在1年内不得再次申请设立认证机构等审批事项。  **第四十七条** 申请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获得认证机构设立等审批事项批准证书的，国家认监委应当撤销其批准证书；申请人在3年内不得再次申请设立认证机构。  **第四十八条** 认证机构未经批准，擅自设立子公司或分公司从事认证活动的，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责令其子公司或分公司停止认证活动，处10万以上50万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国家认监委给予认证机构停业整顿6个月，对负有责任的认证人员，给予停止执业1年的处罚；情节严重的，国家认监委撤销认证机构批准证书，对负有责任的认证人员，撤销其执业资格，并予公布。  **第四十九条** 认证机构设立的办事机构从事签订认证合同、组织现场审核（检查）、出具审核（检查）报告、实施认证决定、收取认证费用等认证活动的，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撤销其备案，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国家认监委给予认证机构停业整顿6个月，对负有责任的认证人员，给予停止执业1年的处罚，并予公布。  **第五十条** 境外认证机构在中国境内设立的代表机构从事签订认证合同、组织现场审核（检查）、出具审核（检查）报告、实施认证决定、收取认证费用等认证活动的，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责令其停止违法行为，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国家认监委应当撤销其备案，并予公布。  **第五十一条** 认证机构设立的子公司、分公司以其他形式设立机构或者委托他人从事认证活动的，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国家认监委撤销子公司、分公司的批准资格，并对其认证机构停业整顿6个月，对负有责任的认证人员，给予停止执业1年的处罚；情节严重的，国家认监委撤销认证机构批准证书，对负有责任的认证人员，撤销其执业资格，并予公布。  **第五十二条** 认证机构未经国家认监委批准，分包境外认证机构认证业务的，国家认监委应当责令其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给予其停业整顿6个月，并予公布；对负有责任的认证人员，给予停止执业1年的处罚；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五十三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认监委或者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责令其改正，给予警告，并予以公布：  （一）专职认证人员发生变更，其数量和执业资格不符合要求的；  （二）认证机构发生变更事项，未按照规定办理变更手续的；  （三）未按时提交年度审查报告、获证组织等信息或者提交的材料失实的；  （四）其他违反本办法规定的。  **第五十四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认监委或者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可以处3万元以下罚款：  （一）对已经暂停和撤销的认证证书，未向社会公布的；  （二）未向认证委托人提供认证审核文件的；  （三）审核时间严重不足，低于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规定的；  （四）从事认证咨询活动的；  （五）获证组织的产品不符合相关法律法规要求或者产品生产标准未按照法定要求备案，认证机构未按照规定暂停其认证证书或者未采取其他纠正措施的；  （六）在行政机关的监督检查中，拒绝提供反映其从业活动的情况或者隐瞒有关情况、提供虚假材料的；  （七）其他违反本办法规定的。  **第五十五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责令其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国家认监委应当责令其停业整顿6个月直至撤销其批准证书，并予公布：  （一）聘用未经国家注册（确认）的人员或者使用不符合认证要求和能力的人员从事认证审核、检查活动的；  （二）增加、减少、遗漏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规定程序要求，认证人员未到审核现场或者未对认证委托人的纠正措施进行有效验证即出具认证证书的；  （三）内部管理混乱、多办公场所作出认证决定，导致未按照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的程序和要求对其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实施有效的认证或者跟踪监督，造成不良社会影响的；  （四）认证的产品、服务、管理体系不能持续符合认证要求，认证机构未按照规定暂停或者撤销认证证书，并对外公布的；  （五）其他违反认证基本规范、认证规则规定的。  **第五十六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责令其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国家认监委应当撤销其批准证书，并予公布：  （一）超出批准范围开展认证活动的；  （二）涂改、伪造《认证机构批准书》，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批准资格的；  （三）停业整顿期间，继续从事认证活动的；  （四）停业整顿期满后，仍未按照整改要求从事认证活动的。  **第五十七条** 认证机构存在出具虚假认证结论或者出具的结论严重失实的，国家认监委应当撤销其批准证书，并予公布；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给予警告，对负有直接责任认证人员，撤销其执业资格；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五十八条** 对于认证机构的其他违法行为，依照《认证认可条例》等有关法律法规予以处罚。  **第五十九条** 国家认监委和地方认证监管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依法对认证活动实施监督，有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等违法行为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六十条** 香港、澳门和台湾地区的认证机构在大陆设立认证机构或者代表机构，依照本办法第二章关于境外认证机构的规定办理相关审批手续，并遵守本办法的规定。  **第六十一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解释。  **第六十二条** 本办法自2011年9月1日起施行。 |